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신탁 법인용 MMF 15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신탁 법인용 MMF 15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신탁 법인용 MMF 15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3년 2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년 4월 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2.28]

한국투자 신종 법인용 MMF 15호 [펀드코드 : 33425]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채산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율변동위험**,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신종 법인용 MMF 15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MMI CALL × 10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투자전략 세부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잔존만기 범위내의 우량자산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 미징구- 오프라인 (C)	없음	0.1046	0.0400	0.1500	0.1095	11	23	35	6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이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종류C-e)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실적 주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3.02.28		2020.02.29~ 2023.02.28		2018.03.01~ 2023.02.28		
	수수료미 징구(C)	2002.01.07	2.87		1.99		1.66		1.71		2.77
	비교지수	-	2.41		1.57		1.24		1.36		2.84
	수익률 변동성	2002.01.07	0.12		0.15		0.14		0.11		11.07
(주1) 비교지수 : (MMI CALL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MMF)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홍현	1970	책임 (부장)	28	9,126	2.98	2.09	2.98	2.09	16년 11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MMF는 장부가로 기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괴리수준이 클 경우(1,000분의 5)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자산 30% 이하시 시가평가 전환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이 자산총액의 30%이하인 경우 기준가격 계산시 시가평가로 전환됩니다. 안정적 자산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분류기준에 의거한 현금,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기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아 안정적 자산이 30%이하가 되는 경우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대표번호 : 02-2055-5555 / 인터넷 홈페이지 : ki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3년 4월 1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J)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신종 법인용 MMF 15호	33425
수수료선취-직판 (A-J)	C76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AK4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B7202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B720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법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신종 법인용 MMF 15호	33425
수수료선택-직판 (A-J)	C76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AK4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B7202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B720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2년 01월 07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4년 07월 05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 투자신탁으로 변경
2006년 07월 21일	-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한국 클린MMF 투자신탁 15호 ⇒ 변경후: 한국 신종MMF 투자신탁 15호] - 환매수수료 삭제 - 투자신탁보수 변경 [변경전: 총 연0.23% ⇒ 변경후: 총 연0.17%]
2009년 05월 02일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 신종MMF 투자신탁 15호 ⇒ 변경후 : 한국투자 신종 법인용 MMF 15호]
2009년 07월 27일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반영
2009년 10월 15일	신탁업자 변경 등 [변경전 : 주식회사 국민은행 ⇒ 변경후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013년 08월 09일	종류명 투자신탁으로 전환
2015년 08월 31일	종류 수익증권 삭제(종류 C-J) 및 신설(종류 C-M, 종류 C-MJ)
2018년 05월 03일	종류 수익증권 신설(종류 A-J) 및 판매회사보수율 인상 (종류C) [변경전: 총 연0.01% ⇒ 변경후: 총 연0.04%]
2020년 12월 22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펀드서비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3.02.28 기준]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MMF)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홍현	1970	부장	28	9,126	2.98	2.09	2.98	2.09	16년 11개월
<이력>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1999.05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 Fixed Income운용본부, 민간투자폴운영부, 민간폴운영부, 솔루션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MMF)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이력>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홍현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이도윤	2006.10.23 ~ 2007.01.04
이용신	2007.01.05 ~ 2009.02.26
박현봉	2009.02.27 ~ 2013.03.28
임광택	2013.03.29 ~ 2013.05.30
김동주	2013.05.31 ~ 2015.08.30
홍 현	2015.08.31 ~ 현재

(주 1)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법인용),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 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택-직판 (A-J)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법 제3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연기금투자월에 예약할 수 있는 자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법 제3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연기금투자월에 예약할 수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택(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택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택후취형보다 상

	(C)	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J)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으로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자산 및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 투자대상자산 등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한다. <u>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u> 1. 남은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 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 <u>(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 3. 남은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 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단기사채등	

8. 환매조건부매도

9.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 71 조 제 4 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4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5 호부터 제 7 호에 해당하는 것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신탁계약서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신탁계약서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제한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 일 이상 100 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	

	<u>서”라 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u>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 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한다).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 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u>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u>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남은 만기가 1 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u>운용하는 행위</u>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u>60 일</u>을 초과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서 제19조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잔존만기 범위내의 우량 자산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MI CALL × 100%)]

■ 비교지수 지정 사유

- MMI 지수는 단기시장지수로서 이 중 CALL 지수는 초단기시장지수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MMF로 투자등급 초단기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MMI CALL 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특이사항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	경제 상황이나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의 여건 또는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MMF는 장부가로 기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괴리수준이 클 경우(1,000분의 5)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u>안정적 자산 30%이하 시가 평가 전환에 따른 위험</u>	<u>이 투자신탁의 안정적 자산이 자산총액의 30%이하인 경우 기준가격 계산시 시가평가로 전환됩니다. 안정적 자산이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분류기준에 의거한 현금,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기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아 안정적 자산이 30%이하가 되는 경우 시가 계산에 의한 기준가격을 반영시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u>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융상품의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 일부를 조합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실제 수익률이 목표 만기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고위험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부동산 PF, 대출채권, 파생상품, CDS계약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고위험자산인 경우도 있으나 신용평가사 부여등급은 짧은 만기 및 신용보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조화를 통해 높은 등급의 증권으로 발행되나, 실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초자산은 부여등급보다 고위험자산일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12%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낮은 6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단기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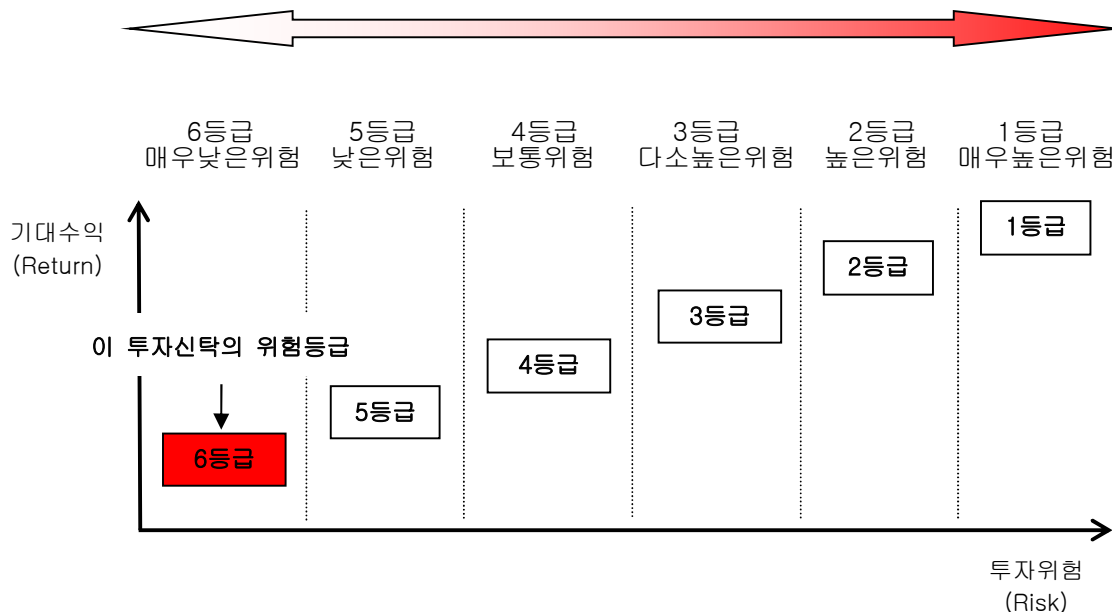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5등급	6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0.5%이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5%초과
2등급	높은 위험	15%초과 25%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0%초과 15%이하
4등급	보통 위험	5%초과 10%이하
5등급	낮은 위험	0.5%초과 5%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0.5%이하
-----	----------	--------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중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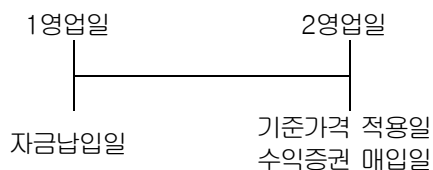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직판 (A-J)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납입금액의 0.01%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법 제3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연기금투자물에 예탁할 수 있는 자	없음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법 제3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간연기금투자물에 예탁할 수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	없음

-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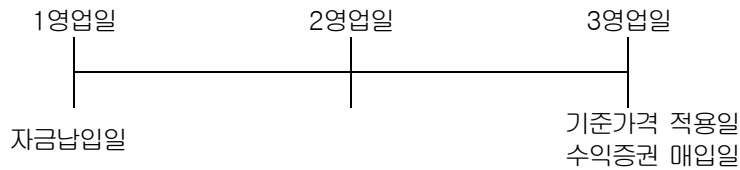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가격의 적용 예외

(1)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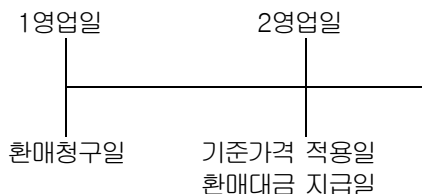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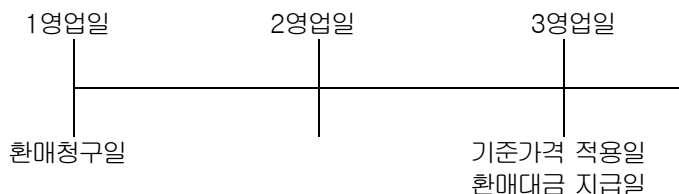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 예외

(1)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

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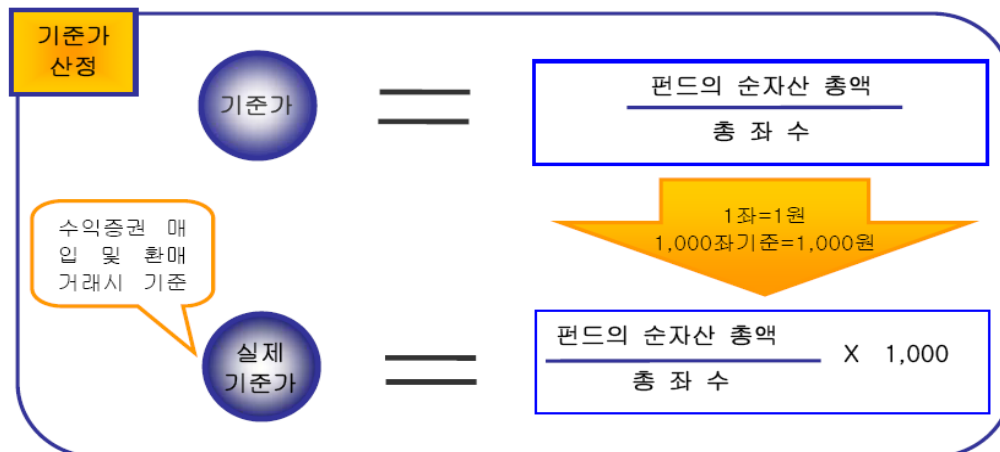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00분의 5)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30%를 초과하여야 함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 집합투자업자는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이하인 경우 상기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함.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30%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함 - 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함 1. 집합투자업자가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경우 2.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유효이자율법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시가평가 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계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에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직판 (A-J)	납입금액의 0.01%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 형총보 수·비	증권 거래 비용

	보수			회사 보수				용)	
수수료선취-직판 (A-J)	0.0550	0.0000	0.0048	0.0048	0.0646	0.0049	0.0695	-	0.0089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 (C)	0.0550	0.0400	0.0048	0.0048	0.1046	0.0049	0.1095	0.1500	0.0089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 (C-M)	0.0550	0.0300	0.0048	0.0048	0.0946	0.0092	0.1038	-	0.0088
수수료미징구-직 판 (C-MJ)	0.0550	0.0000	0.0048	0.0048	0.0646	0.0090	0.0736	-	0.0085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 생시	-	-	사유발 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2.01.07 ~ 2023.01.06]

종류 C-M 및 종류 C-MJ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비용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으로 연간 0.0043%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기타비용 예시 : 예약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 금액 : 55,477,493 원]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2.01.07 ~ 2023.01.06]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금액 : 53,694,837 원]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 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	------

		1 년 후	2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수수료선취-직판 (A-J)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6	23	40	9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	23	35	62	14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M)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	22	34	59	133
수수료미징구- 직판 (C-MJ)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5	24	42	95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J]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01%]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1 기(2022.01.07 ~ 2023.01.06)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20 기(2021.01.07 ~ 2022.01.06)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19 기(2020.01.07 ~ 2021.01.06)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1 기	제 20기	제 19기
	2023.01.06	2022.01.06	2021.01.06
운용자산	383,810,279,118	676,521,655,084	355,195,975,657
증권	359,580,986,326	649,769,825,132	354,735,060,13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4,229,292,792	26,751,829,952	460,915,51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863,798,662	1,519,973,094	338,195,507
자산총계	385,674,077,780	678,041,628,178	355,534,171,16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1,223,381	136,235,003	84,912,728
부채총계	91,223,381	136,235,003	84,912,728
원본	375,887,494,441	671,342,154,967	351,297,002,346
수익조정금	-5,506,858,293	926,851,073	-1,174,520,366
이익잉여금	15,202,218,251	5,636,387,135	5,326,776,456
자본총계	385,582,854,399	677,905,393,175	355,449,258,436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1 기	제 20기	제 19기
	(2022.01.07~2023.01.06)	(2021.01.07~2022.01.06)	(2020.01.07~2021.01.06)
운용수익	13,805,485,775	5,788,416,548	5,235,849,536
이자수익	13,765,206,097	5,782,717,938	5,225,282,66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0,279,678	5,698,610	10,566,876
기타수익	1,959,762,641	316,224,185	488,520,586
운용비용	503,073,518	411,759,702	353,168,885
관련회사 보수	449,378,685	380,036,613	317,178,988
매매수수료	53,694,833	31,723,089	35,989,897
기타비용	59,956,647	56,493,896	44,424,781
당기순이익	15,202,218,251	5,636,387,135	5,326,776,45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21 기 0 원, 20 기 0 원, 19 기 0 원 발생)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21 기 0 원, 20 기 0 원, 19 기 0 원 발생)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을

[단위:주,백만원,%]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3,808,624	-	-	6,507,809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합 계	3,808,624	-	-	6,507,809	-	-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목	제21기 (2023.01.06)		제20기 (2022.01.06)		제19기 (2021.01.0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 용 자 산		0		0		0
현금및예치금		24,229,292,792		26,751,829,952		460,915,51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229,292,792		26,751,829,952		460,915,519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197,362,946,971		454,856,262,851		297,822,100,964
1. 콜론	0		100,000,000,000		30,0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89,000,000,000		36,200,000,000		38,400,000,000	
3. 매입어음	108,362,946,971		318,656,262,851		229,422,100,964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62,218,039,355		194,913,562,281		56,912,959,174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162,218,039,355		194,913,562,281		56,912,959,174	
3. 수익증권	0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1,863,798,662		1,519,973,094		338,195,50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14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1,856,922,500		1,518,911,890		337,515,384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6,876,162		1,061,204		680,109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385,674,077,780		678,041,628,178		355,534,171,164
부 채		0		0		0
운용부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1,223,381		136,235,003		84,912,72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91,093,102		136,235,003		84,912,728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130,279		0		0	
부 채 총 계		91,223,381		136,235,003		84,912,728
자 본		0		0		0
1. 원본	375,887,494,441		671,342,154,967		351,297,002,346	
2. 이월잉여금	9,695,359,958		6,563,238,208		4,152,256,090	
(발행좌수 당기 : 375,887,494,441 좌 전기 : 671,342,154,967 좌 전전기 : 351,297,002,346 좌)		15,202,218,251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5,506,858,293		5,636,387,135 926,851,073		5,326,776,456 -1,174,520,366
(기준가격 당기 : 1,000.00 원 전기 : 1,000.00 원 전전기 : 1,000.00 원)						
자 본 총 계		385,582,854,399		677,905,393,175		355,449,258,4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85,674,077,780		678,041,628,178		355,534,171,164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1기 (2022.01.07 ~ 2023.01.06)		제20기 (2021.01.07 ~ 2022.01.06)		제19기 (2020.01.07 ~ 2021.01.0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5,765,071,320		6,104,640,158		5,724,370,122
1. 투자수익		15,724,791,642		6,098,941,548		5,713,803,246
1. 이 자 수 익	13,765,206,097		5,782,717,938		5,225,282,660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1,959,585,545		316,223,610		488,520,586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15,473,156		14,202,133		18,381,72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91,411,690		0		1,270,681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4,061,466		14,202,133		17,111,048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75,193,478		8,503,523		7,814,85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7,457,321		0		851,20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57,736,157		8,503,523		6,963,653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563,030,165		468,253,598		397,593,666
1. 운용수수료	345,002,385		308,922,822		258,791,346	
2. 판매수수료	48,636,854		20,286,444		15,655,159	
3. 수탁수수료	30,109,300		26,960,537		22,616,789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44,138,786		38,610,810		25,066,254	
6. 기 타 비 용	95,142,840		73,472,985		75,464,118	
당기순(손실)이익		15,202,041,155		5,636,386,560		5,326,776,456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40		8		15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종류 모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01.07 ~ 2023.01.06	6,709	6,709	54,819	55,259	57,771	58,269	3,757	3,857
2021.01.07 ~ 2022.01.06	3,511	3,511	21,934	22,074	18,736	18,866	6,709	6,780
2020.01.07 ~ 2021.01.06	4,333	4,333	8,932	8,993	9,753	9,827	3,511	3,55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	--------	--------	--------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01.07 ~ 2023.01.06	97	97	1,291	1,301	1,354	1,371	33	34
2021.01.07 ~ 2022.01.06	1	1	742	746	647	650	97	98
2020.01.07 ~ 2021.01.06	1	1	0	0	0	0	1	1

주 1) 20220107 ~ 2023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85,063,948] 좌 / [85,082,661] 원

주 2) 20210107 ~ 2022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89,650,075] 좌 / [89,650,075] 원

주 3) 20200107 ~ 2021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487,652] 좌 / [1,487,652] 원

(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01.07 ~ 2023.01.06	1,991	1,991	42,792	43,091	44,742	45,067	41	42
2021.01.07 ~ 2022.01.06	77	77	13,196	13,283	11,282	11,356	1,991	2,010
2020.01.07 ~ 2021.01.06	417	417	2,461	2,474	2,801	2,820	77	78

주 1) 20220107 ~ 2023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41,944,768] 좌 / [41,953,995] 원

주 2) 20210107 ~ 2022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1,760,218,870] 좌 / [1,760,218,870] 원

주 3) 20200107 ~ 2021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86,586,394] 좌 / [86,586,394] 원

(4)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01.07 ~ 2023.01.06	4,625	4,625	10,684	10,796	11,625	11,760	3,685	3,780
2021.01.07 ~ 2022.01.06	3,434	3,434	7,965	8,001	6,774	6,814	4,625	4,671

2020.01.07 ~ 2021.01.06	3,916	3,916	6,393	6,437	6,875	6,925	3,434	3,475
----------------------------	-------	-------	-------	-------	-------	-------	-------	-------

주 1) 20220107 ~ 2023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9,485,786,408] 좌 / [9,487,873,280] 원

주 2) 20210107 ~ 2022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4,456,267,394] 좌 / [4,456,267,394] 원

주 3) 20200107 ~ 2021010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4,041,758,386] 좌 / [4,041,758,386]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3.02.28	2020.02.29~ 2023.02.28	2018.03.01~ 2023.02.28	2002.01.07~ 2023.02.28
투자신탁	2.98	2.09	1.77	1.82	2.83
비교지수	2.41	1.57	1.24	1.36	2.84
수익률 변동성	0.12	0.15	0.14	0.11	1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87	1.99	1.66	1.71	2.77
비교지수	2.41	1.57	1.24	1.36	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2.89	1.99	1.67	1.72	1.65
비교지수	2.41	1.57	1.24	1.36	1.36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2.91	2.02	1.69	1.75	1.69
비교지수	2.41	1.57	1.24	1.36	1.36

(주 1) 비교지수 : (MMI CALL ×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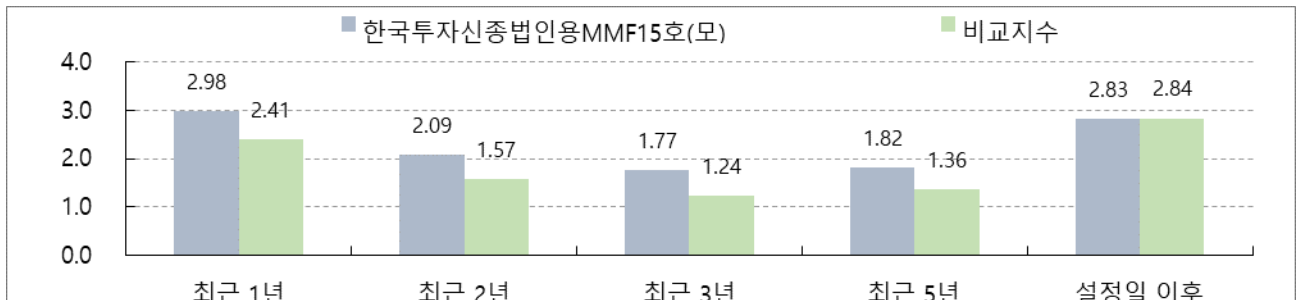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에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2.03.01~ 2023.02.28	2021.03.01~ 2022.02.28	2020.03.01~ 2021.02.28	2019.03.01~ 2020.02.29	2018.03.01~ 2019.02.28
종류 모	2.98	1.20	1.13	1.83	1.98
비교지수	2.41	0.74	0.58	1.52	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2.87	1.11	1.02	1.72	1.86
비교지수	2.41	0.74	0.58	1.52	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M)	2.89	1.10	1.02	1.73	1.87
비교지수	2.41	0.74	0.58	1.52	1.57
수수료미징구-직판 (C-MJ)	2.91	1.13	1.05	1.76	1.91
비교지수	2.41	0.74	0.58	1.52	1.57

(주 1) 비교지수 : (MMI CALL ×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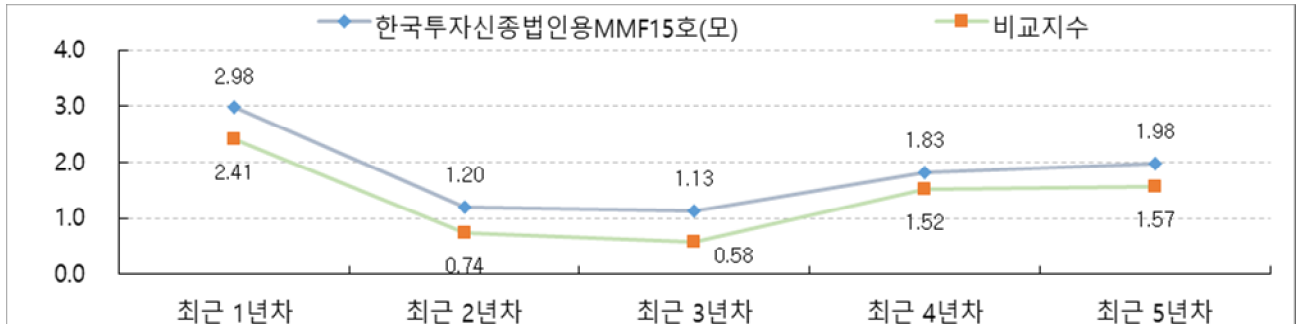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2.12.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1,632	992	0	0	0	0	0	0	532	642	3,797
	(0.00)	(42.97)	(26.12)	(0.00)	(0.00)	(0.00)	(0.00)	(0.00)	(0.00)	(14.00)	(16.91)	(100.00)
합계	0	1,632	992	0	0	0	0	0	0	532	642	3,797
	(0.00)	(42.97)	(26.12)	(0.00)	(0.00)	(0.00)	(0.00)	(0.00)	(0.00)	(14.00)	(16.9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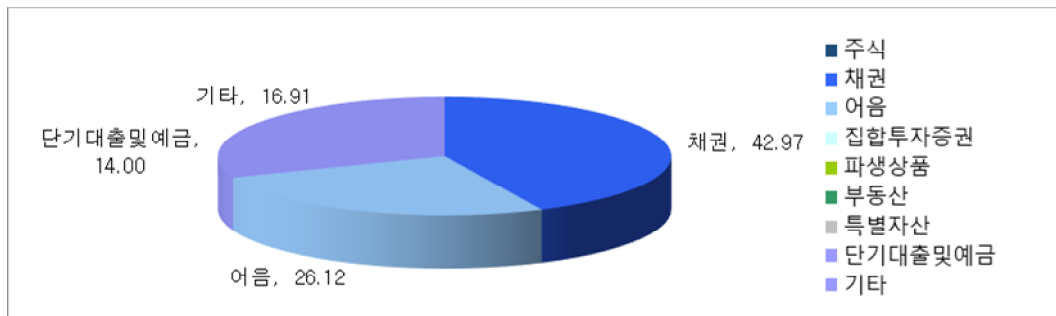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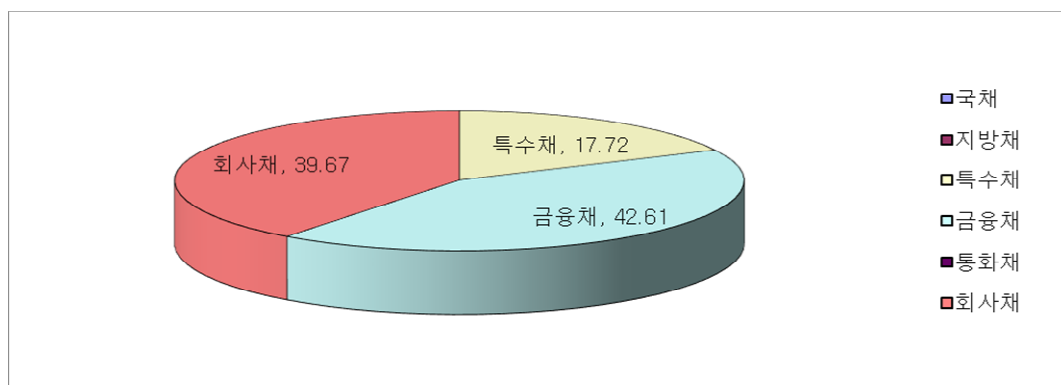
(주 5)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1) 국내채권 종류별 구성현황

[2022.12.31 현재 /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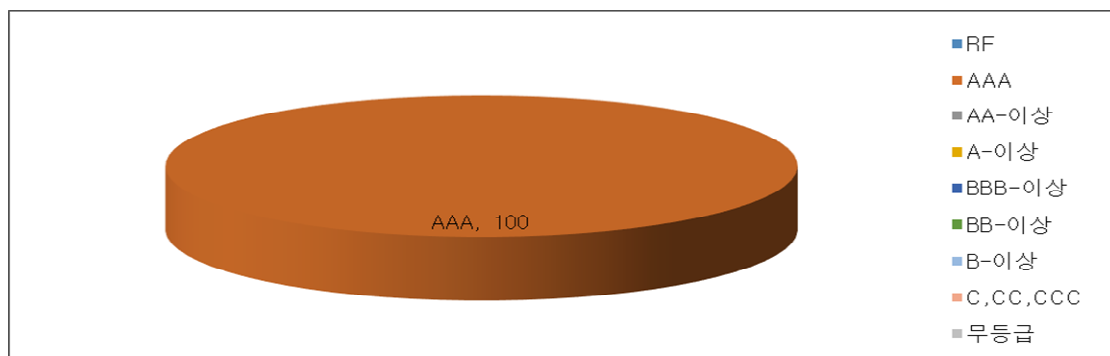
구분	채 권 종 류						합 계
	국 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 액	0	0	289	695	0	647	1,632
비 중	(0.00)	(0.00)	(17.72)	(42.61)	(0.00)	(39.6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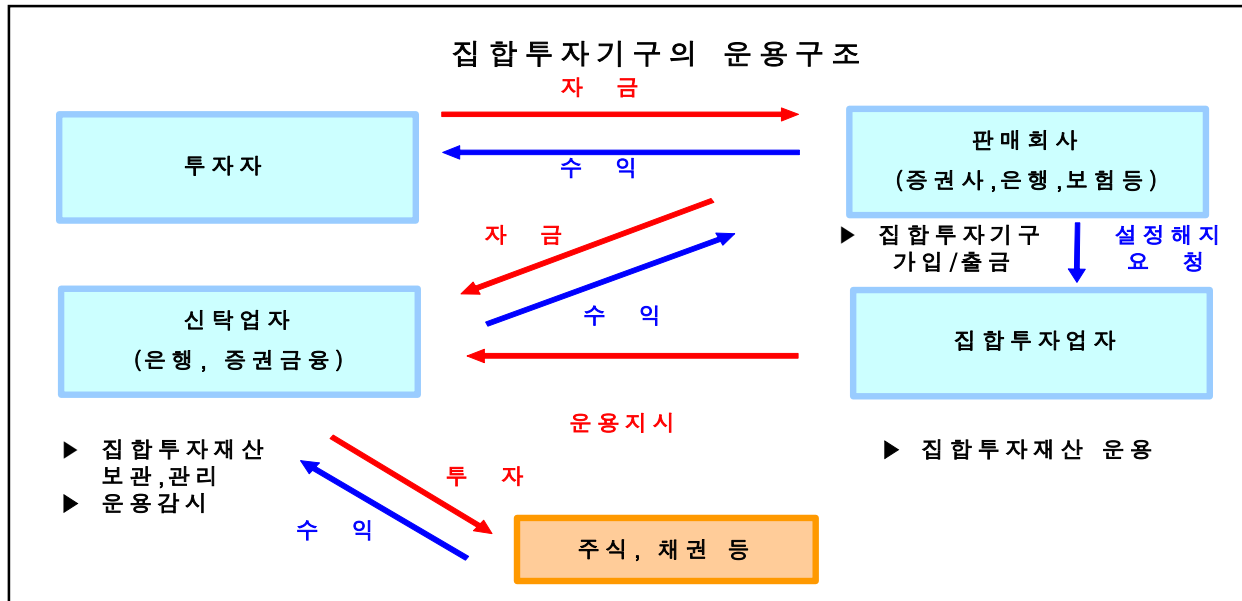
(2) 국내채권 신용평가등급별 구성현황

[2022.12.31 현재 / 단위:억원,%]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 계
	RF	AAA	AA-이상	A-이상	BBB-이상	BB-이상	B-이상	C,CC,CCC	무등급	
금액	0	1,632	0	0	0	0	0	0	0	1,632
비중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회 사 연 혁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주)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30 : 한국투자증권 편입 - 2022.07.29 :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 본 금	660.5억원
주 요 주 주 현 황	한국투자증권(100%)
이 해 관 계 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3기 (2022.12.31)	제22기 (2021.12.31.)	계정과목	제23기 (2022.1.1.~ 2022.12.31.)	제22기 (2021.1.1.~ 2021.12.31.)
현금및예치금	110,805	6,587	영업수익	137,094	148,123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277	50,110	영업비용	86,816	96,821
기타포괄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2,152	1,690	영업이익	50,278	51,302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104,005	92,257	영업외수익	5,573	2,522
대출채권및수취채권	945	806	영업외비용	14,024	8,701
유형 자산	5,549	7,200	법인세차감전	41,827	45,123
기타 자산	33,544	40,029	법인세비용	10,740	12,037

자산총계	267,277	198,679	당기순이익	31,087	33,086
예수부채	50,403	136			
기타부채	33,530	46,748			
부채총계	83,933	46,884			
자본금	66,050	66,050			
자본잉여금	10,735	10,7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4	353			
이익잉여금	105,745	74,657			
자본총계	183,344	151,795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2.28. 현재 / 단위:억]

집합 투자 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 산및 부동 산파 생	특별자 산및특 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 금융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9,014	83,078	10,546	-	46,598	18,922	88	530	36,853	47,441	333,07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연락처 : 02-3770-8800,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에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0길 17 우리금융상암센터 3층 (연락처 : 02-3151-3500,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케이지제로인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02-769-9900, www.zero.in.co.kr)

나. 주요업무

1.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
--	--	-----------------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정리이행 계획, 정리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 5%이하인 경우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3호의2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원]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계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